

「평창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예방 및  
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# 심 사 보 고 서

## 1. 심 사 경 위

가. 제안일자 및 제출자 : 2012. 6. 12(화) 평창군수

나. 회부일자 : 2012. 6. 20(수)

다. 상정일자 : 2012. 6. 21(목) 제186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 
제1차 조례특위 상정

## 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자 : 환경과장)

- 야생동물 서식지인 산림에서 임간재배하는 산양삼 등 임산물은 야생동물로부터 피해예방 대책이 어려우므로 피해 보상대상에서 제외하여 무분별한 피해보상을 최소화 하고,
- 평창군유해야생동물구제단의 구성·운영·지원 근거를 마련 하려는 것임.

## 3.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

(전문위원 : 장동기)

- 본 조례안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과 관련한 운영상 문제점을 보완하고 구제단 설치·운영 및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일부개정 조례안임.

○ 주요 내용을 보면

- 산림에서 임간 재배하는 임산물은 피해보상을 제외 하였으며
- 구제단 설치 및 구성, 운영비 지원 등에 대한 규정을 신설 하였음.

○ 본 조례안은 운영상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구제단 설치 등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음.

**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**

**5. 심사결과 : 원안의결**

**6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**

**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**

**【붙임】** 평창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예방 및 보상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 1부